
2017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계획

2017. 6월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산업안전실



2017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계획

1 목 적

-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「안전관리 전문기관」의 업무수행 실태와 수행능력을 평가하고,
 - 그 결과를 공개하여 위탁업무 수준 우수 전문기관 양성 및 수요자(사업장) 전달 서비스 향상 도모

추진배경 및 경과

◆ 추진배경

- 「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」의 <과제1>안전보건책임 명확화 - <4>전문기관 역할 재정립 - ① 안전보건공단

☞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·보건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는지 평가·피드백·관리하는 재해예방기관의 HUB 역할 수행

◆ 추진경과

- 재해예방 전문기관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('15.8월)
-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개선방안 차관님 보고('15.11월, '16.6월)
-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 개선* TFT 운영('16.7~9월)
 - * 평가방법·항목·주기·결과공개 등 개선, 평가주체 공단으로 일원화 등
-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 개선내용 차관님 보고('16.8·10월, 2회)
- '17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계획 시달('17.2월)
-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근거 법제화(산안법 개정, '17.4.18)
 - ※ 평가근거 : 산안법 제15조제5항
 - ※ 공단 위탁근거 : 산안법 제65조제2항1의2

2 세부 평가계획

'16년 평가 결과 및 주요 변경 내용

◆ 2016년 평가 결과 : 안전관리전문기관(103개) 상대평가 실시

A등급(우수)	B등급(보통)	C등급(미흡)	D등급(불량)
19개소(18.5%)	39개소(37.8%)	35개소(34.0%)	10개소(9.7%)

◆ 2017년 주요 변경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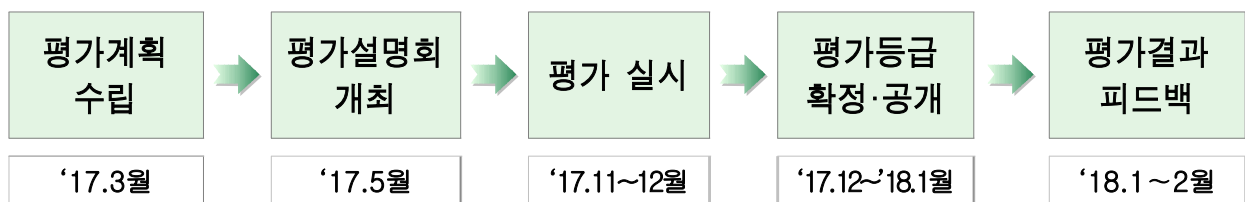
항 목	2016년	2017년
평가방법	· 상대평가	· 절대평가
평가등급	· 4등급(A. B. C. D)	· 5등급(S, A. B. C. D)
평가항목	· 3개 분야의 21개 항목 (가감점 포함)	· 2개 분야의 22개 항목 (가감점 포함)
평가주체	· 고용노동부	· 안전보건공단
평가주기	· 매년 1회	· (좌동)

1. 평가대상 : 111개소('17.3월 기준)

계	서울청	중부청	부산청	대구청	광주청	대전청
111개소	11개소	44개소	27개소	8개소	10개소	11개소

※ '17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대상 제외 기준 마련 중

2. 평가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('17. 6월) 최종 평가계획 및 평가매뉴얼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
- ('17.10월) 안전관리전문기관 세부평가 계획 수립
- ('17.10월)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평가일정 통보 및 위탁사업장 현황 요청
- ('17.11~12월)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
- ('17.12월)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및 결과 확정
- ('18. 1월) 평가 등급 고용노동부와 공단홈페이지 등에 공개

3. 평가 주기 및 평가기간

- (주기) 1년 주기로 정기평가 실시
 - 전년도 평가일부터 평가 연도 평가일 전날까지 수행한 안전관리 위탁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
 - ※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 수탁 거부, 민원 발생 등 특정 사유 발생 기관에 대해 수시평가 실시
- (평가기간) '17.11월 ~ 12월

4. 평가반 구성 및 설명회 개최

- (평가반) 지역본부별로 전문기관 수를 고려하여 평가반 구성 운영
 - 각 반은 2명(공단 직원, 고용노동부 관할 감독관 등) 이상으로 구성·운영
 - 1개 전문기관 당 최소 1일 이상 평가 실시
- (설명회) 전문기관 설명회 및 평가반 사전교육 개최
 - 평가대상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「업무수행능력 평가표」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 설명회 개최(5월)
 -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반 사전교육 실시(11월)
 - * 회의 개최를 통해 전문기관 중점 점검사항, 평가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공유

4. 평가방법 및 항목

○ (평가방법) 5등급(S~D) 절대평가(1,000점 만점)

S등급(최우수)	A등급(우수)	B등급(보통)	C등급(미흡)	D등급(불량)
900점 이상	800~899점	600~799점	400~599점	400점 미만

-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위탁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
- 지역본부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절대평가 실시
 - ※ 위탁관리 사업장이 50개미만인 기관은 서류 및 현장 확인 강화
- 평가반(장) 회의를 통한 평가점수 편차 조정 및 검증하여 최종 평가 등급 결정
-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지도사업장 만족도 조사 실시

○ (평가항목) 운영체계분야(400점), 업무성과분야(600점)

운영체계분야(400점) * 3개 항목	■ 운영관리체계(60점),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(240점),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100점) * 가·감점 : 포상 및 종합화(가점), 행정처분(감점)
업무운영분야(600점) * 3개 항목	■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(300점), 재해감소(100점), 만족도 및 우수사례(200점) * 가·감점 : 신고·조치건수(가점), 재해발생 및 산재은폐(감점)

5.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

- (공개)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등급 공개
- (활용) 평가결과를 민간위탁사업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 강화
 -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가감점을 부여 등

3 기타 사항

- '17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 수립
- 평가항목(위험성평가 인정율 등)에 대한 사전평가를 위해 제출 받은 위탁사업장의 현황 누락 등으로 사전평가가 불가능시“0점” 또는 감점 부여
- 평가 종료시까지 평가항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 점수“0점”처리
- 평가 대상기관의 소속 지부(회) 및 출장소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 평가 실시
- 최종 평가결과는 최종 등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및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

※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 전에 평가대상 민간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이의제기 안내